#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3052 제출년월일: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 사무명 :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
- 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1) 출연 근거
  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
  - 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>

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3. **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의 출연금**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** 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12조의2(출연금)
- 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>

제12조의2(출연금)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
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·도의 안분액 × (35/100)

## 2) 출연 필요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법정 출연금
-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·도(서울·인천·경기)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·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

## 다. 출연 사무 내용

- 1)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
- 2) 「지방자치법」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

## 라. 출연 기관 개요

1) 기 관 명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
2) 소 재 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(공덕동, 지방재정회관 3층)

3) 규 모

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

구 분	정 · 현 원	인원수	세부 내용
조합위원	정원	23인	시·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(17인), 행정인전부 지방재정정책관(1), 행정인전부 균형발전정책관(1), 행정인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(2인), 균형발전전문가(2인)
	현원	23인	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및 16개 시도 기획조정실장(17인)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(1),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(1),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(2인), 소멸대응전문가(2인)
사무직원	정원	4인	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(1인) · 6급(1인)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(2인)
	현원	4인	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(1인) · 6급(1인)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(2인)

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: 108.9 m²(33평, 임차 사무실)

### 4) 위 치 도



<위 치 도>



<지방재정회관 건물>

# 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2026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363,648,619천원
  - ※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국세수입 전망('24~'28년)에 따른 잠정액으로, 실제 출연 금액은 세수에 따라 변동 가능
- 2) 2026년 산출근거(안)
  - 1.004.759.476천원(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1)) × 35%
    - + 11,982,802천원('24년 결산 기금 정산분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②항~제③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 성 자 :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원진희(☎ 2133-6889)

<sup>1)</sup> 지방소비세 인상 10%p분(약 12.4조원)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(약 4.5조원)을 제외한 잔여분(약 7.9조원)에 최근 3년 서울시 안분율 평균액(12.83%) 적용